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
일부개정법률안
(송재봉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 번호 | 19723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6. 7. 3.

발 의 자 : 송재봉·김문수·한준호
이용선·김남희·황명선
이광희·박홍배·최혁진
이연희·박정현·박 정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기후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현재 기상산업은 기상 관련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신성장동력이자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산업임. 그런데 기상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하나 국내 기상산업에는 소규모 영세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산업의 발전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.

한편,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법은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있는데, 그 용도가 주로 탄소 저감 및 에너지 전환 지원에만 편중되어 있어 이를 기후 적응 및 기상 데이터 산업에 대한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기후대응기금 용도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상데이터 분석 및 재난대응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여 기금을 활용할 수

있도록 함으로써 기상산업의 발전과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70조).

법률 제 호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0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2.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상데이터 분석 및 재난대응 서비스
산업에 대한 지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